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소음표시제, 인증제 관련)

2004. 7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소음표시, 인증제관련)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소음발생기계”라 함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특정소음발생기계”라 함은 소음발생기계중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큰 기계·기구 기타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9조의3 내지 제4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음도표지 부착 등) ①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음발생기계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기계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9조의3(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인증) ①특정소음발생기계의 소음허용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특정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

(이하 “특정기계제작자”라 한다)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소음발생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특정기계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시험수수료, 소음도인증의 방법 및 소음도인증의 면제와 생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준용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소음도검사 및 인증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는 “제49조의3”으로, “제32조”는 “제49조의3제1항”으로, “자동차제작자”는 “특정기계제작자”로 본다.

제49조의5(제작·판매의 금지) 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 하지 아니하거나,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음발생기계 또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 제작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6(소음도검사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 및 제4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 및 인증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의7(인증의 양도 · 양수 등)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기계제작자 또는 제49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특정기계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
1. ~ 6. (생략) 7. “工場”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 第1號의 工場을 말한다. 다만,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決定된 空港施設내의 航空機 整備工場을 제외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 -----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 ----- -----
8. · 9. (생략) <u><신 설></u>	8. · 9. (현행과 같음) 10. “소음발생기계”라 함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으 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u><신 설></u>	11. “특정소음발생기계”라 함은 소 음발생기계중 사람의 건강에 위 해를 줄 우려가 큰 기계·기구 기타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第49條의2(騷音度標識의 附着勸告) <p>環境部長官은 消費者에게 低騷音製品을 選擇·購買할 수 있는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高騷音을 발생하는 機器·機具 기타 製品(電氣用品安全管理法에 의 한 型式承認對象機器를 제외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機械등에 騷音의 정도를 표시하는 標識를 附着하여 販賣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제49조의2(소음도표지 부착 등) ①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음발생기계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기계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

<신 설>

제49조의3(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인증) ①특정소음발생기계의 소음 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특정소음발생기계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특정기계제작자”라 한다)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소음발생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특정기계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시험수수료, 소음도인증의 방법 및 소음도인증의 면제와 생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p><u><신 설></u></p>	<p>제49조의4(준용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특정소음발생기계의 소음도검사 및 인증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는 “제49조의3”으로, “제32조”는 “제49조의3제1항”으로, “자동차제작자”는 “특정기계제작자”로 본다.</p>
<p><u><신 설></u></p>	<p>제49조의5(제작 · 판매의 금지) 환경부장관은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표지를 부착 하지 아니하거나,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음발생기계 또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 제작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p>

<신 설>

제49조의6(소음도검사기관) ①환경부

장관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 및 제49조의3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소음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소음도검사 및 인증시험
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음도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
사수수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9조의7(인증의 양도 · 양수 등) 제
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기계제작자 또는 제
4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특정기계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